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4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한병도・이기헌・서영교

박희승 · 서미화 · 박수현

이해식 · 임오경 · 이원택

한민수・박 정・김윤덕

윤건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 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 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 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10년간의 한시적인 운용으로는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내기 어렵고, 매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성과 도출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연도마다 직전 5회계연도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제1항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만」(의안번호 제2068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1조원"을 "2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28조제1항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직전 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금의 성과와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1. -----2조원 <신 설>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 <신 설> 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2. (생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 분석 및 공개) ① -----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 -----직전 회계연 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지방소멸대응기금-----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생 략) 제2조(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삭 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u> 가진다.</u>